

## 1. 개정이유

「미술진흥법」 제18조의 미술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제도가 시행(법률 제19568호, 2023. 7. 25. 제정, 2026. 7. 26. 시행)됨에 따라, 이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미술 서비스업 신고 절차 등 마련

- 1)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, 미술 서비스업 신고·변경 신고 사항 및 서식 규정(안 제2조제1항·제2항 및 별지 제1호)
- 2)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10조의2에 따라, 폐업신고서 서식 마련(안 제2조제3항 및 별지 제2호)
- 3)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2조에 따라,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 마련(안 제2조제4항 및 별지 제3호)

나.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서식 마련(안 제3조 및 별지 제4호·제5호)

다.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, 행정처분 기록 대장 서식 마련(안 제4조 및 별지 제6호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    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실시 예정

3) 행정규제 : 협의 예정

##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미술진흥법」 및 「미술진흥법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) ① 법 제18제1항 후단에서 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이란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.

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.

③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.

④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.

제3조(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)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발급해야 하는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증 재교부 신청서에 신고증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(신

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)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을 재교부해야 한다.

제4조(행정처분기록대장)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은 별지 제6호의 서식과 같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## 미술 서비스업 (변경)신고서

(앞쪽)

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     | 처리기간              | 3일 |
| 신고인  | 성명(대표자) | 생년월일<br>(외국인등록번호) |    |
|      | 주 소     | 전화번호              |    |

상호(법인명)

영업소 소재지

전화번호

미술 서비스업의 종류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화랑업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술품 경매업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술품 자문업 |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술품 대여·판매업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술품 감정업 |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술품 전시업    |

※다음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

|      |      |        |  |
|------|------|--------|--|
| 신고번호 |      | 신고 연월일 |  |
| 변경사항 | 변경 전 |        |  |
|      | 변경 후 |        |  |

「미술진흥법」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의 ☐ 신고(☐ 변경신고)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귀하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고인(대표자) | 1.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출서류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당 공무원   |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별자치시 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 · 구 조례에 따라 ( )원 |
| 확인사항     | 2.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(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)<br>3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폐업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|      |     |            |
|------|-----|------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<br>3일 |
|------|-----|------------|

|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신고인 | 성명(대표자) | 생년월일<br>(외국인등록번호) |
|     | 주 소     | 전화번호              |

업 종

- ☐화랑업
- ☐미술품 경매업
- ☐미술품 자문업
- ☐미술품 대여·판매업
- ☐미술품 감정업
- ☐미술품 전시업

영업 폐지일

년 월 일

폐 지 사 유

신고증의 분실사유

「미술진흥법」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1.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<br>※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,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 | 수수료<br>없음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
##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|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| 접수일           | 처리기간         | 즉시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|
| 양도인<br>(사망자,<br>피합병법인) | 성명(대표자)<br>주소 | 생년월일<br>전화번호 |    |
| 양수인<br>(상속인,<br>합병법인)  | 성명(대표자)<br>주소 | 생년월일<br>전화번호 |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양도인(사망자,<br>피합병법인)의 상호(명칭)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양도인(사망자,<br>피합병법인)의 신고번호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 영업장의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양수인(상속인,<br>합병법인)이 사용할<br>상호(명칭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위승계의 사유 및<br>대상(업종)             | <div> <input type="checkbox"/>화랑업                 <input type="checkbox"/>미술품 경매업             </div> <div> <input type="checkbox"/>미술품 자문업                 <input type="checkbox"/>미술품 대여·판매업             </div> <div> <input type="checkbox"/>미술품 감정업                 <input type="checkbox"/>미술품 전시업             </div> |
| 지위승계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| <div>                    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                </div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「미술진흥법」 제20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 
(서명 또는 인)

신고인 양수인(상속인, 합병법인)  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     귀하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신고인(대표자)<br>제출서류 | 1. 영업을 양도한 자, 사망한 자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법인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<br>2.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<br>가. 영업 양도의 경우: 양도·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,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1부(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)<br>나. 상속의 경우: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<br>다. 법인 합병의 경우: 법인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| 수수료<br>없음 |
| 담당 공무원<br>확인사항   |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### 처리절차

|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|
|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|
| 신고서 작성 | → | 접 수                | → | 검토·확인              | → | 결 재                | → | 수 리 |
| 신고인    |   | 처 리 기 관<br>(시군구청장) |   | 처 리 기 관<br>(시군구청장) |   | 처 리 기 관<br>(시군구청장) |   |     |

##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

1.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「미술진흥법」 제1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1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.

가.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

| 처분일 | 행정처분 내용(근거법을 포함) |
|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    |

나.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

| 적발일 | 「미술진흥법」 위반내용 | 진행 중인 내용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

비고

- 1)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일란에 “해당없음”이라고 적습니다.
  - 2)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나목 표의 적발일란에 “해당없음”이라고 적습니다.
  - 3)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기록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기록사항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.
2.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,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으로 다시 적발된 때에는 「미술진흥법」 제20조제4항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양도인 생년월일: 성명: (서명 또는 인)

- 8 -

양수인 생년월일: 성명: (서명 또는 인)

##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

|        |  |
|--------|--|
| 신고번호   |  |
| 대표자 성명 |  |
| 생년월일   |  |
| 주소     |  |
| 명칭     |  |
| 소재지    |  |
| 업종     |  |

「미술진흥법」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 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

### 유의사항

- 9 -
- ※ 미술 서비스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 신고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.
  - ※ 위 기재사항 중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신고증을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.

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|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|--------|----|
|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접수일자 |  | 처리기간   | 3일 |
| 신청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(대표자) |      |  | 생년월일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|      |  | 전화번호   |    |
| 상호(법인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| 전화번호   |    |
| 영업소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|        |    |
| 미술 서비스업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|        |    |
| <div><div>[ ]화랑업</div><div>[ ]미술품 경매업</div><div>[ ]미술품 자문업</div><div>[ ]미술품 대여·판매업</div><div>[ ]미술품 감정업</div><div>[ ]미술품 전시업</div></div> |         |      |  |        |    |
| 신고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| 신고 연월일 |    |

「미술진흥법」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  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인(대표자)<br>첨부 서류 | 신고증(혈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 |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조례가 정한 금액 ( )원 |

처리절차

|    |   |    |   |    |   |    |   |        |
|-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----|
| 신청 | → | 접수 | → | 확인 | → | 결재 | → | 신고증 발급 |
|-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----|

신청인

처리기관: 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담당 부서)

## 행정처분기록대장

[illegible]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&lt;신 설&gt;</u> | <u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미술진흥법」 및 「미술진흥법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<u>제2조(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)</u><br><u>① 법 제18제1항 후단에서 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이란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.</u>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<u>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<u>③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<u>④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<u>제3조(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)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신 설>

<신 설>

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발급해야 하는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증 재교부신청서에 신고증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(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)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을 재교부해야 한

<신 설>

다.

제4조(행정처분기록대장) 영 제11

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

장은 별지 제6호의 서식과 같다.

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     | (044) 203 - 2748 |